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630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02호	고민정의원	2024.9.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제5245호	문정복의원	2024.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4.11.25.)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2024. 11. 27.)는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대안 및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9)을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함.

- 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2024. 11. 27.)는 고민정의원과 문정복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함.
- 마.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교육위원회(2024. 11. 28.)는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 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 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으로 한다.

-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 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 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 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u>설></u>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
		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
		<u>용의 도서</u>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
		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
		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
		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
		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① 학교에서는 <u>국가가 저작권을</u>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u>정하거나 인정한</u>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u> <u>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u>아니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u>
<u>다만, 교육부장</u>
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u>수 있다.</u>
<u>④</u> <u>저작·검정·</u>
인정·발행·공급·선정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 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지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 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 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 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 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
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세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29
조제3항
<u>.</u>

② (현행과 같음)